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9월 6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입시회) 제3차 위원회(1999년 9월 1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개정사유
  - 입법예고 예외에 관한 규정중 일부 규정은 그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 또는 삭제하고, 입법예고의 문안을 별지로 “예시”하여 작성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며,
  - 일률적으로 규정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법지연 등 문제점이 있어 기간단축에 관한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입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1) 입법예고 제외대상 정비(안 제5조)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2) 입법예고문안에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통일(안 제6조제1항)
  - 3) 입법예고기간의 단축규정 단서조항으로 신설(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등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5조의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중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판단이나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입법예고문은 작성이 용이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서식화하였으며, 제8조의 입법예고기간은 현행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긴급사유 발생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자칫 남용의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요지
  - 제8조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긴급사유 등과 특별한 사정 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경우 남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예고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함.

##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8호
----------	-----------

제출년월일 : 1999. 9. 15.  
제출자 : 유남열위원외1인

## 1. 수정이유

- 제8조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긴급사유 등과 특별한 사정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경우 남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안 제8조(예고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예고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p>	<p>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
----------	----

제출년월일 : 1999. 9.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사유

- 입법예고 예의에 관한 규정중 일부 규정은 그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 또는 삭제하고, 입법예고의 문안을 별지로 “예시”하여 작성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며,
- 일률적으로 규정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법지연 등 문제점이 있어 기간단축에 관한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입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입법예고 제외대상 정비(안 제5조)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나. 입법예고문안에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통일(안 제6조제1항)
- 다. 입법예고기간의 단축규정 단서조항으로 신설(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602호 : '97. 12. 31), 입법예고에관한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는 삭제한다.

- 2.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4. 삭제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예고안 작성)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 제정(또는 개정, 폐지)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 폐지)이유

### 2. 주요골자

- 가.
- 나.
- 다.

###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등포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 3가 385-1 (전화 : 670 - 3○○○~○, FAX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li> <li>2. <u>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u></li> <li>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li> <li>4. <u>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u></li> </ol>	<p>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등을 규정하는 경우</u></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삭제</li> </ol>
<p>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①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u>입법예고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u></li> <li>2. <u>입법취지</u></li> <li>3. <u>입법 주요내용</u></li> <li>4. <u>의견제출에 관한 사항</u></li> <li>5. <u>기타 필요한 사항</u></li> </ol> <p>②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p>	<p>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①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u>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u></p>	<p>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u>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1999년 9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조례규정 중 상위법규와 중복되어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폐지하고 타 관련법규 개정 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정·정비하고자 함.